

## 귀하는 의료 비용 내역에 대해 설명해주는 “최적 견적서”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

법에 따라 의료 제공자는 보험이 없거나 보험을 이용 중이지 않은 환자에게 의료 항목과 서비스 견적서를 제공해야 합니다.

- 어떤 비응급 항목이나 서비스라도 총 예상 비용에 대한 최적 견적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여기에는 의료 검진, 처방 약, 장비, 입원비 등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.
- 영업일 기준 귀하의 의료 서비스 및 항목이 시작되기 최소 1일 전까지 의료 제공자에게 최적 견적서를 서면으로 받으십시오. 항목 또는 서비스 예약을 잡기 전에 귀하의 의료 제공자나 귀하가 선택한 다른 제공자에게 최적 견적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- 최적 견적서보다 최소 400달러가 초과한 청구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최적 견적서의 복사본 또는 사진을 보관해 두십시오.

최적 견적서와 관련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[www.cms.gov/nosurprises](http://www.cms.gov/nosurprises)를 참고하거나 1-877-696-6775번으로 전화하십시오.